ĐIỀU ƯỚC QUỐC TẾ

Thông báo số 19/2022/TB-LPQT ngày 18 tháng 5 năm 2022 về việc điều ước quốc tế có hiệu lực: "Công hàm trao đổi sửa đổi Quy tắc cụ thể mặt hàng quy định tại Phụ lục 3-A của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tự do giữa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và Chính phủ nước Đại Hàn Dân Quốc"

(Tiếp theo Công báo số 421 + 422)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409.21	--코일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구리 - 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7409.31	--코일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9.4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9.90	-기타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0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 · 판지 ·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410.1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0.12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뒷면을 붙인 것	
		7410.2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0.22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1		구리로 만든 관(管)	
		7411.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11.21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1.22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2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412.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2.2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4.13		구리로 만든 연선 · 케이블 · 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413.00	-구리로 만든 연선 · 케이블 · 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8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5		구리로 만든 못 · 압정 · 제도용 핀 · 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진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 · 볼트(bolt) · 너트(nut) · 스크루훅(screw hook) · 리벳(rivet) · 코터(cotter) · 코터핀(cotter-pin) ·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415.10	-못과 압정, 제도용 핀 · 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나선가공을 하지 않은 그 밖의 물품	
		7415.21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나선가공한 물품	
		7415.33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41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8		구리로 만든 식탁용품 · 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구리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 · 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구리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418.10	-식탁용품 · 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 · 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8.2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9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419.10	-체인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419.91	--주조 · 주형 · 압착 · 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			제 75 류 니켈과 그 제품	
	75.01		니켈의 매트(mat) · 소결(燒結)한 산화니켈 ·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501.10	-니켈의 매트(ma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1.20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2		니켈의 괴(塊)	
		7502.10	-합금하지 않은 니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2.20	-니켈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3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503.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4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504.00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5		니켈의 봉 · 프로파일(profile) · 선(線)	
			-봉과 프로파일(profile)	
		7505.11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5.12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선(線)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505.21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5.22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6		니켈의 판 · 시트(sheet) · 스트립 · 박(箔)	
		7506.1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6.2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7		니켈로 만든 관(管)이나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관(管)	
		7507.11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7.12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7.20	-관(管) 연결구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8		니켈로 만든 기타 제품	
		7508.10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 · 그릴 · 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508.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			제 76 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		알루미늄의 괴(塊)	
		7601.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1.20	-알루미늄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2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602.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3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603.10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3.20	-층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604.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7604.21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6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5		알루미늄의 선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7605.1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7605.2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6		알루미늄의 판 · 시트(sheet) · 스트립(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	
		7606.11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606.1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606.91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6.9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7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 · 판지 ·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607.11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7.20	-뒷면을 붙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8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7608.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608.2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9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609.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0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 9406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610.1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1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611.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6.12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612.10	-연질의 튜브형 용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3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7613.00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4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614.1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6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5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 · 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 · 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5.10	-식탁용품 · 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 패드 · 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5.2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6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616.10	-못 · 압정 · 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 스크루(screw) · 볼트(bolt) · 너트(nut) · 스크루 훅(screw hook) · 리벳(rivet) · 코터(cotter) · 코터핀(cotter-pin) · 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616.91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 · 그릴 · 망 · 울타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8			제 78 류 납과 그 제품	
	78.01		납의 괴(塊)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801.10	-정제한 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801.91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8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8.02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802.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8.04		납의 판 · 시트(sheet) · 스트립 · 박(箔), 가루와 플레이크(flake)	
			-판 · 시트(sheet) · 스트립 · 박(箔)	
		7804.11	--시트(sheet) · 스트립 · 박(箔)[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8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804.20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8.06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806.00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9			제 79 류 아연과 그 제품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9.01		아연의 괴(塊)	
			-합금하지 않은 아연	
		7901.11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901.12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901.20	-아연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9.02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902.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9.03		아연의 더스트(dust)·가루·플레이크(flake)	
		7903.10	-아연 더스트(dus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9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9.04		아연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	
		7904.00	-아연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9.05		아연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7905.00	-아연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9.07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907.00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0			제 80 류 주석과 그 제품	
	80.01		주석의 괴(塊)	
		8001.10	-합금하지 않은 주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001.20	-주석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0.02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002.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0.03		주석의 봉 · 프로파일(profile) · 선(線)	
		8003.00	-주석의 봉 · 프로파일(profile) · 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0.07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8007.00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			제 81 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81.01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1.10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기타	
		8101.94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1.96	--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1.97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2		몰리브데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2.10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102.94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2.95	--봉[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2.96	--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2.97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3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3.20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3.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괴(塊)	
		8104.11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8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4.2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104.30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rasping)·연삭설(turning)·알갱이,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5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5.20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괴(塊),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5.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6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6.00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7		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7.20	-카드뮴의 괴(塊),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107.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8.20	-티타늄의 괴(塊),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8.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9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9.20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9.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0		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110.10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0.2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1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1.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		베릴륨 · 크로뮴 · 게르마늄 · 바나듐 · 갈륨 · 하프늄 · 인듐 · 니오븀(컬럼븀) · 레늄 · 탈륨과 이것으로 만든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베릴륨	
		8112.12	--괴(塊),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13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크로뮴	
		8112.21	--괴(塊),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22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탈륨	
		8112.51	--괴(塊),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52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112.92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3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3.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			제 82 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 · 도구 · 칼붙이 · 스푼 · 포크, 이들의 부분품	
	82.01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 · 삽 · 곡괭이 · 픽스(picks) · 괭이 · 포크와 쇠스랑, 도끼 · 빌흑(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 · 초절기(草切機) · 울타리 전단기(剪斷機) · 제재(製材)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 · 원예용 · 임업용 공구	
		8201.10	-가래와 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1.30	-곡괭이 · 픽스(picks) · 괭이 · 쇠스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1.40	-도끼 · 빌흑(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1.5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1.60	-울타리 전단기(剪斷機) · 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1.90	-그 밖의 농업용 · 원예용 · 임업용 수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 · 슬로팅(slotting) ·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02.10	-수동식 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20	-띠톱의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원형 톱날[슬리팅(slitting)이나 슬로팅(slotting) 톱날을 포함한다]	
		8202.31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3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40	-체인톱의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톱날	
		8202.91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3		줄 ·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 · 집게 · 핀셋 · 금속 절단용 가위 · 파이프커터(pipe-cutter) · 볼트크로퍼(bolt cropper) · 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수공구	
		8203.10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03.20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3.30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3.40	-파이프커터(pipe-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4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토크미터렌치(torque meter wrench)를 포함하나 탭렌치(tap wrench)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	
		8204.11	--조절할 수 없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4.12	--조절할 수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4.20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5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05.10	-드릴링 · 드레딩(threading)이나 태핑용(tapping)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5.20	-망치(hammer, sledge hamm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5.30	-목재 가공용 대패 · 끌 · 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5.40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한다)	
		8205.51	--가정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5.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5.60	-블로램프(blow lam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5.70	-바이스(vice) · 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5.90	-기타(이 호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06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8206.00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 · 스탬핑(stamping)용 · 펀칭(punching)용 · 태핑(tapping)용 · 드레딩(threading)용 · 드릴링(drilling)용 · 보링(boring)용 · 브로칭(broaching)용 · 밀링(milling)용 · 터닝(turning)용 · 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	
		8207.13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1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20	-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30	- 프레싱(pressing)용 · 스탬핑(stamping)용 · 펀칭(punch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40	-태핑(tapping)용이나 드레딩(thread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07.50	-드릴링(drilling)용 공구(착암기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60	-보링(boring)용이나 브로칭(broach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70	-밀링(mill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80	-터닝(turn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90	-그 밖의 호환성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8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8208.10	-금속 가공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8.20	-목재 가공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8.30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8.40	-농업용 · 원예용 · 임업용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9		공구용 판 · 봉 · 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209.00	-공구용 판 · 봉 · 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 · 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210.0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 · 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1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 8208 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	
		8211.1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211.91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1.92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1.93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11.94	--칼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1.95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2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8212.10	-면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2.2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2.90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3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이들의 날	
		8213.00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이들의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4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종이용 칼], 매니큐어·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214.10	-종이용 칼·편지 개봉기·지우개용 칼·연필깎이와 그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14.20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5		스푼 · 포크 · 국자 · 스키머(skimmer) · 케이크 서버(cake-server) · 생선용 칼 · 버터용 칼 · 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8215.1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5.20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215.9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			제 83 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83.01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 · 다이얼식 · 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301.10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20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30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40	-그 밖의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50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6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7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 · 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 · 문 · 계단 · 창 · 블라인드 · 차체(coachwork) · 마구 · 트렁크 · 장 · 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 · 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302.10	-경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20	-카스터(casto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3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 · 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장착구 · 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302.41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42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50	-모자걸이 · 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60	-자동도어 폐지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3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303.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4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 · 카드인덱스함 · 페이퍼 트레이(paper tray) · 페이퍼 레스트(paper rest) · 펜 트레이(pen tray) · 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 9403 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8304.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 · 카드인덱스함 · 페이퍼 트레이(paper tray) · 페이퍼 레스트(paper rest) · 펜 트레이(pen tray) · 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 9403 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5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 서신용 클립 · 레터코너(letter corner) · 서류용 클립 · 색인용 태그와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예: 사무실용 · 가구류용 · 포장용의 것)	
		8305.10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5.20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5.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3.06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은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	
		8306.10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8306.2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6.30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거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7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8307.10	-철강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7.9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3.08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 · 걸쇠가 붙은 프레임 · 버클(buckle) · 버클(buckle)걸쇠 · 훅(hook) · 아이(eye) · 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 · 신발류 · 신변장식용품 · 손목시계 · 서적 · 차양 · 가죽제품 · 여행구나 마구 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구슬과 스팽글(spangle)	
		8308.10	-훅(hook) · 아이(eye) · 아일릿(eyel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8.20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8.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9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栓) · 캡 · 뚜껑[병마개 · 스크루캡(screw cap) · 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 · 병용 캡슐 · 나선형 마개 · 마개용 커버 · 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	
		8309.10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1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 · 명판 · 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 · 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 94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31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 · 명판 · 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 · 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 94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11		비금속(卑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 · 봉 · 관 · 판 · 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땜 · 납접 · 용접 · 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 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 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	
		8311.1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용접봉[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11.2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선[플럭스(flux)를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11.3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봉과 선[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불로 납땜 · 납접 · 용접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6 부 기계류 ·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 · 음성재생기 ·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 ·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 부속품(제 84 류-제 85 류)				
84			제 84 류 원자로 · 보일러 ·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8401.10	-원자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01.20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1.30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 요소(카트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1.40	-원자로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2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증기발생보일러	
		8402.11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2.12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2.19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2.20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3		중앙난방용 보일러(제 84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03.10	-보일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4		제 8402 호나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 · 과열기 · 그을음제거기 · 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8404.10	-제 8402 호나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4.2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5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405.10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6		증기터빈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06.10	-선박추진용 터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터빈	
		8406.81	--출력이 40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6.82	--출력이 40 메가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8407.10	-항공기용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선박추진용 엔진	
		8407.21	--아웃보드(outboard) 모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7 류의 차량 추진용 왕복 피스톤엔진	
		8407.31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07.32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초과 25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3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 초과 1,0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90	-그 밖의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8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	
		8408.10	-선박추진용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8.20	-제 87 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8.90	-그 밖의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9		제 8407 호나 제 8408 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09.10	-항공기 엔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09.91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0		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수력터빈과 수차	
		8410.11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8410.12 호 및 제 8410.13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0.12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초과 10,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8410.11 호 및 제 8410.13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0.13	--동력이 10,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8410.11 호 및 제 8410.12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0.90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터보제트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1.11	--추진력이 25 킬로뉴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12	--추진력이 25 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터보프로펠러	
		8411.21	--출력이 1,1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22	--출력이 1,1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가스터빈	
		8411.81	--출력이 5,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82	--출력이 5,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		그 밖의 엔진과 모터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2.10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8412.21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8412.31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8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펌프(계기를 갖춘 것이나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8413.11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20	-수지식 펌프(소호 제 8413.11 호나 제 8413.19 호의 것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30	-연료 · 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40	-콘크리트 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50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60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70	-그 밖의 원심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8413.81	--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82	--액체엘리베이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3.91	--펌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92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		기체펌프나 진공펌프 ·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8414.10	-진공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2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30	-냉장 · 냉동 설비용 압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40	-예인용 바퀴달린 섀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팬	
		8414.51	-- 테이블용 · 바닥용 · 벽용 · 창용 · 천장용 · 지붕용 팬(출력이 125 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60	-후드(hood)(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8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8415.10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20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415.81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82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83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		액체연료 · 잘게 부순 고체연료 ·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 · 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416.10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20	-그 밖의 노(爐)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combination burner)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30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 · 기계식 회(灰)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7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8417.10	-배소(焙燒)용 · 용해용이나 그 밖의 열처리용 노(爐)와 오븐(광석 · 황철광이나 금속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7.2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7.8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		냉장고 · 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418.10	-냉장고 · 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가정형 냉장고	
		8418.21	--압축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30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4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50	-냉장용이나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그 밖의 가구[체스트(chest), 캐비닛, 전시용 카운터, 쇼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와 열펌프	
		8418.61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8.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	
		8418.91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		가열 · 조리 · 배소(焙燒) · 증류 · 정류 · 살균 · 저온살균 · 증기가열 · 건조 · 증발 · 응축 · 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 설비 · 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 8514 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	
		8419.11	--가스식인 즉시식 물 가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20	-내과용 · 외과용 · 실험실용 살균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건조기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9.31	--농산물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32	--목재용 · 제지펄프용 · 종이용 · 판지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40	-증류기나 정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50	-열교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60	-기체 액화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기기	
		8419.81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2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	
		8420.1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	
		8420.91	--실린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8421.11	--크림분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12	--의류탈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21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21.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	
		8421.31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	
		8421.9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 · 깡통 · 상자 · 자루 ·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 봉함용 · 실링(sealing)용 · 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 · 단지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접시세척기	
		8422.11	--가정형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2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30	-병 · 깡통 · 상자 · 자루 ·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 봉함용 · 실링(sealing)용 · 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 · 단지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40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 추	
		8423.1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저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20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23.30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hopper scale)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중량 측정기기	
		8423.81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82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초과 5,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90	-각종 저울 추와 저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 · 살포용 · 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424.1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20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3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농업용 또는 원예용 방제기	
		8424.41	--휴대용 방제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기기	
		8424.82	--농업용이나 원예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는 제외한다],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 잭(jack)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나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8425.11	--전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25.31	--전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잭(jack)과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	
		8425.41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42	--그 밖의 잭(jack)과 호이스트(hoist)(액압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 ·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천장주행 크레인 · 트랜스포터 크레인 ·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 교각(橋脚)형 크레인 · 이동식 양하대 ·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8426.11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12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20	-타워크레인(tower cra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30	-문형이나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8426.41	--타이어가 달린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기계	
		8426.91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7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8427.10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 트럭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27.20	-그 밖의 자주식(自走式) 작업트럭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7.90	-그 밖의 작업트럭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		그 밖의 권양(捲揚)용 · 취급용 · 적하용 · 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 · 에스컬레이터 · 컨베이어 · 텔레페릭(teleferic)]	
		8428.10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20	-뉴매틱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연속작동(continuous-action)식 물품용이나 재료용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8428.31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2	--그 밖의 버켓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3	--그 밖의 벨트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28.40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60	-텔레페릭(teleferic)・의자 양하기・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90	-그 밖의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		자주식(自走式) 불도저(bulldozer)・앵글도저(angledozer)・그레이더(grader)・레벨러(leveller)・스크래퍼(scraper)・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엑스커베이터(excavator)・셔블로더(shovel loader)・탬핑머신(tamping machine)・로드롤러(road roller)	
			-불도저(bulldozer)・앵글도저(angledozer)	
		8429.11	--무한 궤도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20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30	-스크래퍼(scrap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40	-탬핑머신(tamping machine)과 로드롤러(road roll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과 엑스커베이터(excavator)・셔블로더(shovel loader)	
		8429.51	--프론트엔드 셔블로더(front-end shovel load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52	--360 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		그 밖의 이동용・정지(整地)용・지균(地均)용・스크래핑(scraping)용・굴착용・탬핑(tamping)용・콤팩팅(compacting)용・채굴용・천공용 기계(토양용・광석용・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8430.10	-항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20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석탄이나 암석 절단기와 터널 뚫는 기계	
		8430.31	--자주식(自走式)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 밖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	
		8430.41	--자주식(自走式)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50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8430.61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		제 8425 호부터 제 8430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31.10	-제 8425 호의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20	-제 8427 호의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428 호의 기계의 것	
		8431.31	--리프트 ·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 에스컬레이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31.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426 호 · 제 8429 호 · 제 8430 호의 기계의 것	
		8431.41	--버켓(bucket) · 셔블(shovel) · 그랩(grab)과 그립(gri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2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3	--소호 제 8430.41 호나 제 8430.49 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		농업용 · 원예용 · 임업용 기계(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와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	
		8432.10	-플라우(쟁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하로우(쇄토기) · 스카리파이어 · 컬티베이터(중경기) · 제초기와 호우	
		8432.21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파종기 · 식부기(植付機) · 이식기	
		8432.31	--무경간(無耕墾) 직접 농법용 파종기 · 식부기(植付機) · 이식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퇴비 살포기와 비료 살포기	
		8432.41	--퇴비 살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42	--비료 살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새의 알 · 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 · 분류기 · 선별기(제 8437 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공원이나 운동장의 잔디 깎는 기계	
		8433.11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3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20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30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40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수확기와 탈곡기	
		8433.51	--수확 · 탈곡 겸용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52	--그 밖의 탈곡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53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60	-새의 알 · 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 · 분류기 · 선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3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4		착유기와 낙농기계	
		8434.10	-착유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4.20	-낙농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5		포도주 · 사과술 · 과실주스나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press) · 크러셔(crusher)와 이와 유사한 기계	
		8435.10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		그 밖의 농업용 · 원예용 · 임업용 · 가금(家禽) 사육용 · 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10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36.21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	
		8436.91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나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7		종자 · 곡물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 · 분류기 · 선별기, 제분업용 기계나 곡물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기계(농장형은 제외한다)	
		8437.10	-종자 · 곡물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 · 분류기 · 선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7.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38		식음료의 조제 · 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	
		8438.10	-베이커리 기계와 마카로니 · 스파게티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20	-과자 · 코코아 · 초콜릿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30	-설탕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40	-양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50	-육류나 가금(家禽)육의 조제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60	-과실 · 견과 · 채소의 조제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종이 · 판지의 제조용이나 완성가공용 기계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39.10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20	-종이 · 판지의 제조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30	-종이 · 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	
		8439.91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0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8440.10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		그 밖의 제지용 펄프 · 종이 · 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8441.10	-절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41.20	-종이백 · 봉지 · 봉투 제조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30	- 카톤(carton) · 박스 · 케이스 · 튜브 · 드럼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40	-제지용 펄프 · 종이 · 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80	-그 밖의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2		플레이트 · 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 · 장치 · 장비(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기계는 제외한다),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 · 그레인 · 연마]한 플레이트 · 실린더와 석판석	
		8442.30	-기계류 · 장치 · 장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2.40	-위의 기계류 · 장치 · 장비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42.50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 · 그레인 · 연마]한 플레이트 · 실린더와 석판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		제 8442 호의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 · 복사기 ·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 8442 호의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8443.11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2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시트(sheet)식 사무실용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2 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3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4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5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6	--곡면인쇄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43.17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인쇄기 · 복사기 ·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443.31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 · 복사 ·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32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과 부속품	
		8443.91	--제 8442 호의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4		인조섬유의 방사(紡絲)용 · 늘림(drawing)용 · 텍스처(texture)용 · 절단용 기계	
		8444.00	-인조섬유의 방사(紡絲)용 · 늘림(drawing)용 · 텍스처(texture)용 · 절단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45		방적준비기계, 방적기 · 합사기(合絲機) · 연사기(撚絲機)와 그 밖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와 제 8446 호나 제 8447 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방적준비기계	
		8445.11	--카드기(card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12	--코밍기(comb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13	--연조기나 조방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20	-방적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30	-합사기(合絲機)나 연사기(撚絲機)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40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46		직기(직조기)	
		8446.1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형으로 한정한다)	
		8446.21	--직조기(동력구동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6.30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리스(shuttleless)형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7		편직기,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짐프사(gimped yarn)・튈(tulle)・레이스・자수천・트리밍(trimming)・브레이드(braid)나 망의 제조용 기계・터프팅(tufting) 기계	
			-원형 편기	
		8447.11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7.12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7.20	-횡(橫) 편직기와 스티치 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4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		제 8444 호 · 제 8445 호 · 제 8446 호 · 제 8447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도비(dobby)기 · 자카드기 · 자동정지기 · 셔틀 교환기], 이 호나 제 8444 호 · 제 8445 호 · 제 8446 호 · 제 8447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스핀들 · 스핀들 플라이어 · 침포 · 코옴(comb) · 방사니플 · 셔틀 · 종광(heald) · 종광 프레임 · 메리야스용 바늘]	
			- 제 8444 호 · 제 8445 호 · 제 8446 호 · 제 8447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	
		8448.11	--도비(dobby)기 · 자카드기와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용 · 복사용 · 천공용 · 조립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20	-제 8444 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445 호의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31	--침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32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48.33	--스핀들 · 스핀들 플라이어 · 스피닝 링 · 링트래블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직기(직조기)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42	--직조기용 바디 · 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447 호의 기계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51	--바늘땀(stitch)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sinker) · 바늘과 그 밖의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9		펠트나 부직포(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 · 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와 모자 제조용 형(型)	
		8449.00	-펠트나 부직포(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 · 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와 모자 제조용 형(型)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 · 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450.11	--완전자동 세탁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12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20	-1 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		세탁용 · 클리닝용 · 쥐어짜기용 · 건조용 · 다림질용 · 프레스용[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 · 표백용 · 염색용 · 드레싱용 · 완성가공용 · 도포용 · 침지(沈漬)용 기계류[제 8450 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적용실 · 직물류나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 · 풀기(unreeling)용 · 접음용 · 절단용 · 핑킹(pinking)용 기계	
		8451.10	-드라이클리닝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건조기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1.21	--1 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30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40	-세탁기 · 표백기 · 염색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50	-감기(reeling)용 기계 · 풀기(unreeling)용 기계 · 접음기 · 절단기 · 핑킹(pinking)용 기계(직물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		재봉기(제 8440 호의 제본용 재봉기는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 · 밑판 · 덮개, 재봉기용 바늘	
		8452.10	-가정형 재봉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재봉기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2.21	--자동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30	-재봉기용 바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90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 · 밑판 · 덮개와 그 부분품, 그 밖의 재봉기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3		원피나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 · 유피(柔皮)기 · 가공기계, 원피 ·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나 그 밖의 물품의 제조용 · 수선용 기계(재봉기는 제외한다)	
		8453.10	-원피 ·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 · 유피(柔皮)기 · 가공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3.20	-신발의 제조용이나 수선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3.80	-그 밖의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		전로 · 레이들(ladle) · 잉곳(ingot)용 주형과 주조기(야금용이나 금속 주조용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4.10	-전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20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30	-주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롤	
		8455.10	-관 압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압연기	
		8455.21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겸용 압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22	--냉간(冷間) 압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30	-압연기용 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90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6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8456.11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12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2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30	-방전 방식으로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40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50	-워터제트 절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7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멀티스테이션(multi-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8457.10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7.2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7.30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8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수평 선반	
		8458.1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선반	
		8458.9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9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보링(boring)·밀링(milling)·나선가공·태핑(tapping)에 사용되는 것[제 8458 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8459.10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	
		8459.2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보링밀링머신(boring-milling machine)	
		8459.3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보링머신(boring machine)	
		8459.4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무릎형 밀링머신(milling machine)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9.5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밀링머신(milling machine)	
		8459.6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70	-그 밖의 나사 절삭용 기계나 태핑머신(tapp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		디버링(deburring)·샤프닝(sharpening)·그라인딩(grinding)·호닝(honing)·래핑(lapping)·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제 8461 호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평면 연삭기	
		8460.12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연삭기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0.22	--무심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23	--그 밖의 원통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24	--기타(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샤프닝머신(sharpening machine)(공구나 커터를 연삭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0.3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40	-호닝머신(honing machine)이나 래핑머신(lapp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		플레이닝(planing)용 · 쉐이핑(shaping)용 · 슬로팅(slotting)용 · 브로칭(broaching)용 · 기어절삭용 · 기어연삭용 · 기어완성가공용 · 톱질용 · 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것으로 한정한다)	
		8461.20	-쉐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30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40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 기어완성가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50	-톱기계나 절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		단조(鍛造)용 · 해머링(hammering)용 · 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 · 접음용 · 교정용 · 펼침용 · 전단용 · 펀칭용 · 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	
		8462.10	-단조기(鍛造機) · 다이스탬핑기(die-stamping machine)(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해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굽힘기 · 접음기 · 교정기 · 펼침기(프레스를 포함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2.2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전단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8462.3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펀칭기나 낫칭기(notching machine)(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462.4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462.91	--액압 프레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3		그 밖의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공용 공작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정한다)	
		8463.10	-드로우벤치(draw-bench)[봉·관·프로파일(profile)·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20	-나사 전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30	-선 가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4		돌·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와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기계	
		8464.10	-톱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4.20	-연마기나 광택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		목재·코르크·뼈·경질 고무·경질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용 공작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과 그 밖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5.10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공구의 교환없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20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465.91	--톱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2	--평삭기 · 밀링머신(milling machine) · 몰딩머신(moulding machine)(절단 방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3	--연삭기 · 샌딩머신(sanding machine) · 광택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4	--굽힘기나 조립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5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이나 모티싱머신(mortic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6	-- 스플리팅(splitting)기 · 슬라이싱(slicing)기 · 박피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6		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 · 툴홀더(tool holder) ·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 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	
		8466.10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20	-가공용 홀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30	-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466.91	--제 8464 호의 기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2	--제 8465 호의 기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3	--제 8456 호부터 제 8461 호까지의 기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4	--제 8462 호나 제 8463 호의 기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압축공기식의 것	
		8467.11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전동기를 갖춘 것	
		8467.21	--각종 드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22	--톱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공구	
		8467.81	--체인톱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	
		8467.91	--체인톱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7.92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		납땜용 · 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이 가능한지에 상관없으며 제 8515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표면 열처리용 기기(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8.10	-수지식 취관(吹管)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20	-가스를 사용하는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 회계기 · 우편요금계기 · 표권발행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	
		8470.10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 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전자계산기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70.21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30	-그 밖의 계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50	-금전 등록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이 상호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49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 8471.41 호나 제 8471.49 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 · 입력장치 · 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60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70	-기억장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8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2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 · 스텐실(stencil) 등사기 · 주소인쇄기 · 현금 자동지불기 · 주화분류기 · 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 · 연필깎이 · 천공기 · 지철기(stapling machine)]	
		8472.10	-등사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2.30	-우편물의 분류기 · 접음기,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 우편물의 개봉기 · 봉함기 · 실링기, 우표의 첨부기나 소인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73		제 8470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 · 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제 8470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73.21	--소호 제 8470.10 호 · 제 8470.21 호 · 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30	-제 8471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40	-제 8472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50	-제 8470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		선별기 · 기계식 체 · 분리기 · 세척기 · 파쇄기 · 분쇄기 · 혼합기 · 반죽기(고체 모양 · 분말 모양 · 페이스트 모양인 토양 · 돌 · 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 · 형입기 · 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 · 세라믹페이스트 · 굳지 않은 시멘트 · 석고 · 가루 모양이나 페이스트 모양인 그 밖의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成形機)	

598

(Xem tiếp Công báo số 425 + 426)

VĂN PHÒNG CHÍNH PHỦ XUẤT BẢN

Địa chỉ:	Số 1, Hoàng Hoa Thám, Ba Đình, Hà Nội
Điện thoại liên hệ:	
- Nội dung:	080.44417; Fax: 080.44517
- Phát hành:	080.48543
Email:	congbao@chinhphu.vn
Website:	http://congbao.chinhphu.vn
In tại:	Xí nghiệp Bản đồ 1- Bộ Quốc phòng